

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
2026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용역

과업지시서
[협상에의한계약]

2026. 5.



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

Jeonbuk Art, Culture & Tourism

용역명	2026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용역	
주관기관	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	
사업담당자	관광마케팅팀 유미미 팀원	063-230-7487
계약담당자	경영지원팀 전주현 팀원	063-230-7423

I. 과업지시서

1. 과업 개요	3
2. 과업 내용	4
3. 과업관리 및 성과품 납품	20
4. 과업수행 준수사항	22
5. [참고] 예정공정표	29

2026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영역

과업지시서

I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2026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영역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**2026년 12월 11일까지**
3. 과업범위 :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시·군에 분포한 체험관광 콘텐츠
※고창, 김제, 부안, 군산 지역 제외
4. 추진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(제한경쟁, 총액계약)
5. 주요내용
 - 로컬 체험관광 콘텐츠 조사·발굴 및 사업설명회·공모전 운영 등
 - 로컬 체험관광콘텐츠 육성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
 - 홍보영상 및 사진 제작 지원 및 홍보물 배너 등 지원

〈 표 1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사업 세부 구성

구분	사업방향	도입 사업
상품 발굴	•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서부내륙권만의 특화된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	서부내륙권 체험 콘텐츠 발굴
상품화 지원	• 발굴된 체험관광 콘텐츠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등 지원을 통한 체험관광상품 개발	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개발
홍보콘텐츠 지원	• 발굴·상품화된 콘텐츠를 토대로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, 홍보영상 및 사진 등 제작	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홍보콘텐츠 지원
사업화 지원	• 개발된 체험관광상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지원 체계 마련	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사업화 지원

6. 기초금액 : 금189,000,000원(금일억팔천구백만원정) ※부가가치세 포함

〈 표 2 〉 과업구분 별 기초금액

구분	과업내용	기초예산	공동수급 구분
콘텐츠 및 체험관광자원 발굴연구	체험관광 자원 조사, 설명회, 공모전등	45,000천원	육성
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	상품 및 홍보콘텐츠 개발, 육성, 컨설팅 등	85,000천원	
홍보콘텐츠 지원	홍보영상 및 사진 제작 지원 등	59,000천원	홍보콘텐츠 지원
합계		189,000천원	

기타 사항

- 제안 시 각 사업비 구분 내 예산 세부 항목은 과업 수행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조정가능하나 **구분별 소요예산 변동 불가**

7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『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』의 일환으로 ‘서부내륙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주도의 체험형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지원’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임
- 서부내륙권 시·군의 각 지역의 고유매력이 담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, 지역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광객 요구도 기반의 로컬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함
- 서부내륙권만의 특성이 담긴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내 관광 콘텐츠 또는 관련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,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필요
-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권이 보유한 자원성 기반의 관광 콘텐츠 공급자를 육성함

II 과업 내용

1. 과업범위

-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

〈 표 3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영역 과업범위

구 분	구 성	내 용	공동수급 과업 구분
체험관광 콘텐츠 및 로컬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	체험관광상품 연구	- 체험관광 로컬 지원 수집	육성 (상품발굴, 상품화지원)
	사업설명회	- 사업 권역별 1회 실시 (총 3회)	
	- 체험관광상품 공모전 개최 (1회)		
	- 자문단 구성 및 운영		
체험관광 콘텐츠 및 로컬 관광자원 육성 및 지원	- 공모전 선정작 40개 대상 온라인 배너 및 포스터 제작		홍보콘텐츠 지원
	- 로컬 체험지도 이미지 제작		
	- 체험관광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(기초/심화)		
	-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 체험관광상품 상품 선별 및 시상식 개최		
홍보영상 및 사진 제작 지원	- 홍보영상 본편 제작	- 20편 (3분 내외)	홍보콘텐츠 지원
	- 숏폼 전용 영상 제작	- 40편 (30~59초 내외)	
	- 우수콘텐츠 선정작 대상 편집본 제작	- 1편 (5분 내외)	
	- 편집본 숏폼 전용 영상 제작	- 2편 (30~59초 내외)	
	- 예비 우수콘텐츠 사진 촬영	- 200장	
	- 우수콘텐츠 추가 사진 촬영	- 50장	
체험관광상품 사업화 지원	- 전문가 스토리텔링 컨설팅		육성(사업화 지원)
	- 상품 판매를 위한 OTA 등록 및 프로모션 관련 교육 실시		
사업 운영 관리	- 프로그램 총괄 및 강사·전문가 운영관리		
	- 대표 체험관광상품 사후관리(우수선정자)		
	- 홍보콘텐츠 제작 및 기타사항 준수		

2. 과업내용

① 체험관광 콘텐츠 및 로컬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

가.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현황조사 및 로컬 관광자원 발굴

1) 체험관광 로컬자원 자료 수집

- 사업대상지 내 체험관광 관련 콘텐츠 조사, 정리하여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화 진행
- 체험관광 관련 상품, 음식, 숙박, 관련 장소 등 포괄적으로 자료 수집
- 지역 유명 전통 체험, 대중에게 알려진 체험관광 코스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고,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체험관광 상품 발굴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함
- 도내 6차산업 관련 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실시, 업장명, 위치, 주요 운영내용 등 기초 정보를 포함한 목록 정리 후 제출

2) 체험관광상품 선별 및 발굴

- 콘텐츠 조사 발굴 내용 기반 실제 상품 구성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선별
- 지역 역사·문화적 가치 및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콘텐츠 선별
- 현장 방문을 통한 취재, 지역전문가, 지역주민 등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내, 지역 간 개별 자원별 숨은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
- 전통, 음식, 레저, 한류 등과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특색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정리

〈 표 4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 과정

단 계	내 용
수집 및 조사	• 자원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한 기존의 지역 자원 및 콘텐츠 조사 • 지역 특색 및 특징 분석
현장취재 및 인터뷰	• 현장취재,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기존자료 보완 및 신규 자료 확보 • 시군 담당자, DMO, 두레 등 지역 관광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시군 수요 조사 진행
전문가 자문 및 평가	• 구성된 자문단 중심 전문가 자문 진행 • 수집된 콘텐츠의 상품성 등 검증 •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및 평가
연계 활동 발굴	• 구성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/체험 활동 발굴

〈 표 5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유형 예시

구 분	내 용
전통 체험	• 전통문화 배우기(한지공예, 탈춤공연, 다도체험 등)
음식 체험	• 지역특산물, 전통 먹거리, 전통주, 베이커리 등
레저 체험	• 수상레저 체험(요트/카누, 서핑 등), 패러글라이딩, 줍라인 등
한류 체험	• 인물, 영화, 드라마 촬영장 방문/체험/사진 촬영 등
숙박 결합체험	• 호텔, 펜션, 한옥 및 민박 등 숙박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
동물 관련 체험	• 반려동물 동반 체험, 반려인 대상 체험(동물 산책, 반려동물 요리 교실, 사진관, 카페 등)
관광시설 체험	• 테마파크, 박물관, 전시관, 수목원 등 입장권 및 개별 체험
여행패키지	• 소규모 단체, 대형 단체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 여행상품
사회적 가치	•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체험,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는 체험(업사이클링 체험, 유기 동물 보호소 방문 등)
기타 체험	•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, 체험 상품으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

기타 사항

• 기재된 내용은 예시이며 콘텐츠 발굴 내용 및 대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

나. 사업설명회 및 공모전 개최

1)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자 육성 사업설명회 개최

- 사업 권역별(북부권, 동부권, 남부권) 사업설명회 3회 개최, 체험관광 공모전을 통한 자원발굴 및 체험관광 업체 선정, 교육 등이 연계된 양식의 보고서 제출

〈 표 6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사업자 육성 사업설명회 운영 개요

구 분	내 용
운영 목적	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육성 사업 운영 안내 및 참여 유도
참석 대상	• 서부내륙권 내 체험관광사업 운영자 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• 아이디어를 보유한 서부내륙권 지역주민 등
진행 내용	•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사업 소개 -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안내, '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' 개요 및 참여 방법 안내 등 • 체험관광 콘텐츠 유통채널(OTA) 소개 - 체험관광 콘텐츠 유통시장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전달, 체험관광 콘텐츠 연계 가능 채널 소개 등 • 토크콘서트 등 -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 시장의 전망,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의 주요 고객,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팁, 기타 질의 사항 등

2)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개최

-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으로 상품성 보유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
-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콘텐츠는 기초교육과 우수 체험관광상품 콘테스트(심화 20선)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되며, 우수콘텐츠 선별 과정에서 최종 우수콘텐츠(최종 5선)로 선정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사업이 추진됨

〈 표 7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 개요

구 분	내 용
운영 목적	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서부내륙권만의 콘텐츠를 선별하고, 육성함으로써 서부내륙권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 상품 개발
참여 대상	• 서부내륙권에서 내·외국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관광상품을 운영 및 판매 중이거나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보유한 운영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- 신청자는 서부내륙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(예비 창업자), 사업장을 둔 단체(사업자)이어야 함
운영 방법	• 공모기간 : 1개월 / 접수방법 : 온라인 • 제출자료 : 제안서 및 각 체험상품 요약서 • 공모전 절차 : 서류검토 → 서부내륙권 예비 체험관광 콘텐츠 선정 → 기초교육 진행 →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 콘텐츠 선정 → 심화 교육 진행 → 상품화 지원
선정 방법	•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진행 - 서류검토 → 심사 위원회 구성 → 심사 진행(우수작 선별 및 평가) → 선정작 통보 * 심사 위원회는 관광 관련 전문가 및 관광 유관기관 분야, OTA 분야 등으로 전문가 구성

3) 사업 명칭의 브랜드화

-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· 지원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명칭 개발 · 제안

4) 공모 접수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업체 대상 홍보 추진

- 재단 및 수행사 보유 채널 활용, 권역별 · 업종별 타겟 홍보 진행
- 문자 · 이메일 · 유선 안내 등 직접 홍보 추진
- 도내 6차산업 인증 사업장 DB 확보 및 참여 독려

5) 공모 접수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업체 대상 홍보 추진

- 공모 목적 및 평가 항목을 반영한 신청서 양식 설계
-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가이드 마련
- 신청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요약 안내자료 제작

6) 전문가 심사를 통한 선별

-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에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평가를 추진하여 총 기초 40개의 콘텐츠를 선정함

※ 선정 예정 수보다 지원 미달 시 홍보 및 공모전 연장을 통한 지원자 확보 필수

〈 표 8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전문가 심사 방법(안)

구 분	내 용
심사 자료	• 제안서 및 체험상품 요약서
심사 방법	•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, 각 체험상품 요약서 서류심사 및 평가(30~40개의 콘텐츠 선정)
심사 위원 구성(안)	• 관광학계 1~2명, OTA 분야 1~2명, 관광유관기관 분야 1~2명, 영상콘텐츠 분야 1명 등

- 심사위원 평가 진행 시, 서부내륙권을 대표하고, 상품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기 위한 척도를 설정하고 평가를 진행함
- 이와 관련하여 지역 대표성, 상품의 우수성, 상품의 시장성,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추진함

〈 표 9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전문가 심사 방법(안)

평가 항목	내 용
지역 대표성	• 지역의 전통적, 역사적 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자원 지역의 생태 및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징을 대표할 지역 대표성
상품의 우수성	• 관광객의 참여와 활동 가능성 등 기타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
상품의 시장성	• 상품화 가능성, 수익성, 타겟시장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체험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
지속가능성	• 사업종료 후 체험관광상품 판매계획, 사업 지속에 대한 운영자의 의지

다. 자문단 구성 및 운영

-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성 방향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수행
- 수집자료에 대한 상품개발 방향성 및 사업화 가능 자문 진행
- 자문위원: 지역문화콘텐츠 전문가, 관광스토리텔링 작가, 관광 상품개발 전문가, 관련 학계 전문가, OTA 분야 전문가, 영상 콘텐츠 분야 전문가, 지역관광 이해관계자(DMO, 두레, 지역 주민, 시군 담당자 등)

※ 전문가 최종 확정 전 재단과 협의 필수

- 내 용: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및 평가, 공모상품 적합성 평가 및 우수 상품 선정 심사, 성과품(홍보영상 및 사진) 검수 등

※ 자문위원 및 회의 개최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

② 체험관광 콘텐츠 및 로컬 관광자원 육성 및 지원

가. 공모전 선정작 온라인 배너 및 포스터 제작

- 공모전 선정작 기초 40개 대상 상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배너 및 포스터 제작 지원
 - 상품의 특징 분석과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개별 면담 후 배너 및 포스터 제작
 - 배너 및 포스터 업체별 각 1종씩 제작
- ※ 사업 일정 및 구성에 따라 제작 종과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나. 로컬 체험지도 이미지 제작

- 공모전 선정작 기준 지도 표기 가능 사업체 선별 후 이미지 제작
 - 관광객 활용 가능 지도형 콘텐츠 디자인
 - 온라인 · SNS · 홍보물 활용 가능 파일 제작 후 납품
 - 국문, 영문 버전 각 제작
- ※ 전년도 심화 20선 당선작이 포함될 수 있음

다. 체험관광상품 육성 교육

- 공모전 절차에 따라 예비 우수 콘텐츠(기초 40선)와 우수콘텐츠(심화 20선), 최종 우수 콘텐츠(최종 5선)로 구분하여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 선정 혜택 지원
- 이와 관련하여 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발된 콘텐츠는 상품화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마케팅 분야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, 최종 우수콘텐츠로 선정될 경우 상품화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지원

1)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기초역량 강화교육

- 기초역량 강화교육은 체험관광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체험관광 콘텐츠 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함
- ※ 교육 운영 일자선 발주처 협의 후 확정

〈 표 10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기초역량 강화 교육 개요

구 분	내 용
추진 목적	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상품성 제고 • 상품 운영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며 운영의 전문성 확보
추진 횟수	• 총 5회 진행
교육 대상	• 공모전에서 선정된 40개의 콘텐츠 및 콘텐츠 운영자
세부 내용	• 체험관광 콘텐츠 : 체험관광상품 기획 및 스토리텔링, 체험관광상품 운영전략, 체험관광상품 기획서 작성 컨설팅 등 • 관광인력 기본역량 : 로컬관광의 이해, 관광트렌드, 관광 서비스 교육 등 • 홍보마케팅 : SNS 마케팅 성공 사례, SNS 상품 운영전략, SNS 홍보마케팅 실전 실습 등 ※ 시활용 교육 1회 필수

〈 그림 1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기초역량 강화 교육 내용(안)

1 회차	2 회차	3 회차	4 회차	5 회차
• 오리엔테이션 • 체험관광상품 기획 및 스토리텔링 • 체험관광상품 운영 전략	• 체험관광콘텐츠 사업 전망 • 판매채널로서 OTA 활용 전략 • 체험관광콘텐츠 성공 사례	• 체험관광상품 기획서 작성 및 컨설팅 • 체험관광콘텐츠 기획서 이야기 나누기	• 미래관광 트렌드 (로컬관광, 스마트 관광 등) • 관광객을 감동시키는 고객 환대	• SNS 마케팅 성공사례 및 전략 • SNS 마케팅 실천 실습 • 수수료식

2)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콘테스트

- 기초역량 강화 교육내용을 토대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고, 실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의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콘테스트를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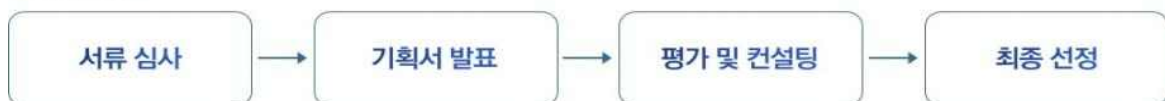
〈 표 11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선정 콘테스트 개요

구 분	내 용
운영 목적	• 공모전 참여 당시 제출한 기획서를 기초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보완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상품화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 검토 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선별
대상	• 기초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콘텐츠
선정 개수	• 20개
선정 혜택	• ‘(가칭) 서부내륙다움 트래블 마스터’ 선정 및 현판 제공 • 상품 운영 현장과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 교육 및 책자 제공 •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

※ 구체적인 선정 혜택은 발주처 협의 후 확정

〈 그림 2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선정 콘테스트 개요(안)

[선정과정]



[선정기준]

지역 대표성	지역의 전통적, 역사적 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자원, 지역의 생태 및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징을 대표할 지역 대표성
체험성/차별성	관광객의 참여와 활동 가능성 등 기타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
시장성	상품화 가능성,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체험 관광상품으로 성장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
실행 가능성	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여건, 운영자의 체험상품 운영 능력, 마케팅 능력 등

3)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 심화 교육

-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체험관광상품을 운영자들이 자립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활성화하는 내용의 실무 및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
 - 현장 방문 교육은 콘텐츠가 실제 운영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, 상품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전문가를 동반하여 진행
- ※ 교육 운영 일자선 발주처 협의 후 확정

〈 표 12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심화 교육 운영 개요

구 분	내 용
운영 목적	•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상품 운영의 지속성과 자립성 확보
운영 횟수	• 총 3회 진행 (실무이론교육 *3-1/현장교육 *3-2/OTA 교육 *3-3)
대상	•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
운영 방법	•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홍보 관련 실무 교육 • 상품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장 방문 교육 및 컨설팅 • OTA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실전 활용 교육 등

3-1)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 심화 실무 이론 교육

-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체험관광 콘텐츠 공급자를 대상으로 상품 기획 및 운영, 홍보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

〈 표 13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심화 실무 교육 커리큘럼(안)

상품 기획	상품 운영	상품 홍보
• 상품 기획서 재검토 • 상품 기획서 컨설팅 • 차별화 전략 마련 • 소개 및 설명글 작성 • 운영 매뉴얼 작성 - 체험 방법 및 시간, 상품 가격 설정, 교보재 활용 여부 등 - 상품 운영 청사진 작성 • 스토리 발굴 및 개발	• 활용 가능 OTA 소개 • OTA 연계 운영 방법 - 판매수수료, 정산 등의 운영 절차 및 대응관리 등 • 수익모델 개발 및 시스템 관리 • 체험 운영 매뉴얼 작성 • 공급자 세무 교육 • 상품 운영 서비스 교육	• SNS 홍보 채널 소개 및 채널별 활용 방법 안내 - 인스타그램, 블로그, 유튜브 등 • 주요 마케팅 채널 정하기 • 키워드 선정 및 입력 • 효과적인 해시태그 및 게시물 작성 방법 안내

3-2) 현장 교육 및 상품화

-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이 운영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품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, OTA 판매를 위한 상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지원

〈 표 14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현장 교육 운영(안)

구 분	내 용
운영 목적	•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이 실제 공급되는 현장에 방문하여 상품 운영에 필요한 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성 제고
운영 장소	•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에 선정된 콘텐츠 사업장
실사 내용	• 체험관광 콘텐츠 관련 시설 점검, 체험관광 콘텐츠 내용 점검, 체험관광 콘텐츠 상품화 계획 확정(금액, 시간, 최소인원, 보조 인력 등) • OTA 업로드를 위한 상품 사진 및 동영상 촬영

3-3) OTA 활용 교육

- OTA 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초 지식 및 활용 기법 등 다양한 OTA 플랫폼 설명과 활용 방법 교육
- OTA 플랫폼을 활용한 실직적 판매 진행을 위한 콘텐츠 분석 및 상세페이지 구성 지원
-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구성 및 실제 관리자 화면 시연 가능 강의를 구성
- OTA 교육 후 활용 가능한 가이드북 제공

※ 교육은 단순 플랫폼 설명이 아닌 실제 계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

라. 최종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및 시상식 진행

- 우수 체험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실적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며 운영성과를 제고, 체험관광상품 공급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
- 최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후 시상식 개최 및 명패 제작 등 비용 처리
- 최우수 체험관광상품은 정량평가(교육 참여도, OTA 판매량, 홍보 참여도 등)와 정성평가(상품의 매력성, 운영자 역량 등)를 통해 선정

※ 최종 우수 체험관광상품 4개 선정, 최우수 1개 최종 선정

③ 체험관광 콘텐츠 홍보영상 및 사진 제작 지원

가. 예비 우수콘텐츠 홍보영상 제작

1) 홍보영상 본편 제작

- 예비우수콘텐츠 20개 대상 각 1편씩 총 20편 제작
- 3분 내외 분량의 체험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한 소개 본편 영상 제작
- 자막 구성 및 필요 시 나레이션 구성

※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영상 분량과 제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2) 숏폼 전용 영상 제작

- 30~59초 내외 분량의 숏폼 규격의 영상 2종 제작
- 자막 구성 및 필요 시 나레이션 구성
- 본편 제작 영상과는 다른 구성의 새로운 영상 촬영 및 제작

※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영상 분량과 제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〈 표 15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홍보영상 내용

구분	내용
제작 분량	• 체험관광콘텐츠 홍보 영상 본편 20편 + 숏폼전용 40편 = 총 60편 - 각 영상 본편(3분 내외), 숏폼전용(30~59초 내외)
제작 방식	• 4K급 이상 실사 촬영 및 2D·3D 그래픽 작업, 종합편집 포함 제작

나. 우수콘텐츠 선정작 통합 홍보 영상 제작

1) 우수콘텐츠 선정작 대상 편집본 제작

-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선정작 5개 대상 편집본 제작
- 본편 제작 영상 편집 후 5분 내외로 제작
- 자막 구성 및 필요 시 나레이션 구성

※ 사업 일정 및 구성에 따라 제작 종과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2) 우수콘텐츠 선정작 대상 숏폼 전용 편집본 제작

- 본편 편집본을 활용하여 숏폼 전용 영상 제작
- 숏폼 전용 편집본 2편 제작 (30~59초 내외)
- 자막 구성 및 필요 시 나레이션 구성

※ 사업 일정 및 구성에 따라 제작 종과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〈 표 16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홍보영상 내용

구분	내용
제작 분량	• 우수 5개 편집본 1편 + 편집본 숏폼 전용 영상 2편 = 총 3편 - 영상 본편 편집본(5분 내외), 숏폼전용(30~59초 내외)
제작 방식	• 편집본에 맞는 자막 배치 및 음향 편집

다. 체험관광콘텐츠 홍보 사진 촬영

1) 예비우수콘텐츠 선정작 대상 사진 촬영

- 예비우수콘텐츠 20개 대상 각 10장
- 플랫폼 등록 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사진 촬영
- 시상식 이전까지 제작 후 납품

※ 사업 일정 및 구성에 따라 제작 종과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2) 우수콘텐츠 선정작 대상 추가 사진 촬영

- 우수콘텐츠 5개 대상 각 10장
- 플랫폼 등록 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사진 추가 촬영

※ 사업 일정 및 구성에 따라 제작 종과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〈 표 17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콘텐츠 홍보사진 내용

구분	내용
제작 분량	• 예비·우수콘텐츠 각 10장 = 총 200장 • 우수콘텐츠 각 10장 = 총 50장
제작 방식	• 4K급 이상 실사 촬영

라. 홍보영상 및 사진 제작 방향

-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을 국내외 관광객 대상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상품의 매력과 차별성을 강조한 영상콘텐츠 제작
-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, 홍보 목적에 적합한 영상미와 스토리텔링 요소를 갖춘 콘텐츠로 제작
- 최신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
- 자막, 나레이션, 음향 효과 등은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
- 대표자, 제작자의 인터뷰를 활용한 간략한 콘텐츠 소개 포함(30초 이내 분량)

※ 촬영 및 영상 제작 시 인터뷰 활용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

④ 체험관광상품 사업화 지원

가. 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전문가 스토리텔링 컨설팅 지원

- 서부내륙권 우수 체험관광상품 대상 스토리텔링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상품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제시 및 구체화
- 콘텐츠 스토리텔링 설계 및 컨설팅 전후 비교 분석 포함한 보고서 형식 결과물 제출 필수

나. 체험관광상품 OTA 플랫폼 상품 등록 및 프로모션 관련 교육

- 실제 상품 판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관광상품을 OTA플랫폼에 가입 및 등록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업로드하고,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함으로써 상품 판매를 촉진
- 심화 OTA 활용 교육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적용 및 상세페이지 수정, 리뷰 관리 및 응대 등 실무 심화 과정 포함 교육 구성
- OTA 플랫폼 추진 가능한 배너광고, 할인쿠폰 이벤트, 플랫폼사 자체 홍보 등과 관련된 교육 실시

〈 표 18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현장 교육 운영(안)

구 분	내 용
추진 방법	• 기존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OTA를 연계 활용하여 체험관광상품 등록 및 판매
주요 대상	• OTA 오픈 마켓 - 국내 : 프리프(Frip), 야놀자, 옥션, G마켓,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- 해외 : 서울패스, Creatrip 등
세부 내용	• OTA 상품 등록 : OTA 플랫폼 가입, OTA 플랫폼 내 상품 업로드 원고 작성 등 • OTA 연계 프로모션 : 플랫폼 배너 광고, 플랫폼 자체 홍보, 특별할인 등

〈 표 19 〉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우수 체험관광콘텐츠 OTA 교육 커리큘럼(안)

구 분	내 용
① 상품 기획서 검토	• 컨설팅을 통해 완성된 상품기획서 검토 및 수정 • OTA 플랫폼 업로드 형식에 맞게 재수정
② OTA 플랫폼 가입	• 체험관광상품 등록을 위한 OTA 플랫폼 호스트 회원가입 • 회원가입을 위한 유선 상담 지원
③ 상품 업로드 원고 작성	• 상품기획서를 바탕으로 상품 원고 작성 • 체험 과정 및 내용, 체험 포인트, 체험사진, 유의사항, 준비물, 예약 규정, 환불 규정, 상품 옵션 작성 및 외국어 번역 등
④ 플랫폼사 제출 및 수정	• 플랫폼사에 작성 완료된 원고 제출 • 플랫폼사 업로드 형식에 맞게 내용 및 포맷 수정 • 업체의 추가요청사항 수렴 및 플랫폼사 전달 • 수정작업 완료 후 최종 업로드

⑤ 사업 운영 관리

가. 프로그램 총괄 운영 관리

- 프로그램 진행인력 및 회차별 전문가 관리
- 프로그램별 교육생 확보(모객) 및 관리
- 각 프로그램별 강연 사진 및 영상 촬영 필수
- 강의장, 각종장비, 다과, 기념품 등 필요물품 세팅 및 점검
- 모든 성과품 납기일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준수

나. 강사 및 전문가 운영관리

- 프로그램별 성격에 맞는 강사(전문가) 섭외 및 운영 방안 제안
- 강연자단 구축 및 선정 사유 또는 근거 제시
- 강사/전문가(자문단) 관리 및 일체 비용 지급(강사료, 경비, 기념품 등)
- 강연 시 필요한 자료집(강의안), 준비물 준비 및 세팅
- 강연자 피드백 관리

※ 사업 운영 관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처리를 포함

다. 서부내륙권 대표 체험관광상품 사후관리

- 온·오프라인 매체별 홍보 세부실행계획수립(차별화된 전략) 및 성과목표 제시
- 여행 상품 판매 및 상품 등록이 가능한 유통채널 제안
- 판로개척을 위한 서부내륙 체험관광 상품 지원 방안 제시
- 유통 및 판로개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회 마련 등을 통한 콘텐츠 상품 유통 채널 확보
-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및 투자자 유치 방안 제안

라. 홍보콘텐츠 제작

- 사업설명회 / 체험관광상품 공모전 홍보 포스터 및 콘텐츠 제작·배포
- 공모전 홍보 유료광고 집행(온라인 카페, SNS채널 등)
- 우수 체험관광상품 홍보콘텐츠 제작 등

마. 영상 및 사진 제작 사후관리

- 완성된 제작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, 납품된 영상물에 하자가 발견 및 발생될 경우, 자막교체, 통계수치수정, 자료화면교체 등 요구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수정·보완 필요
- 최종 성과물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, 타인의 영상물, 음원, 자막폰트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불법사용 금지
-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미비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·보완
- 납품 검사 시 원색이 선명하지 않거나 음향이 고르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 후, 재납품 필요
- 발주처 및 업체의 판단에 따라 홍보사진 품질 이상 시 재촬영 보완 필수

마. 기타사항

- 참가자 개인 소유의 SNS 내 홍보 요청 등 활동 전개
- 운영을 위한 방문 장소(주요 관광지, 식당, 체험 등)의 사전 예약 및 비용 처리
- 운영 시 안전·보건관리 및 참가자, 운영스텝 등 관련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
-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 개발(만족도 조사, 실현 가능성, 불만사항 등)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해 설문지 배포 및 회수
- 전체 촬영은 4K급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
- 과업 시 필요 물품·소품 사전 구비 및 비용 처리
- 항공 촬영 및 드론 촬영이 포함될 경우, 관련 기관의 인허가 절차 사전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
- 과업 진행 시 증빙자료 및 사진 제출, 최종 결과물 제출
- 과업 진행 시 발생하는 섭외·일정 조율 및 관리
- 최종 납품 시 원본 및 자막본 제출

※ 촬영 및 영상 제작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처리(장비대여, 편집, 출연료, 음원, 프로그램, 이미지 및 영상 소스 구매, 소품 등)를 포함

3. 과업 추진 절차(안)

Step 1	업체 공모 및 선정	•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사업 추진 및 운영 대행을 위한 적합한 업체 공모 및 선정
▼		
Step 2	온라인 통합 홍보 채널 개설	•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 및 일정 등을 홍보 안내할 수 있는 SNS 채널 개설
▼		
Step 3	서부내륙권 체험관광상품 사업자 육성 사업 설명회 개최	• 체험관광상품 운영자 및 운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서부내륙권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
▼		
Step 4	서부내륙권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	• 서부내륙권의 지역적 특색이 담겨 있는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및 평가 • 서류심사 과정 시, 콘텐츠를 유형화하는 작업 필요 • 콘텐츠 유형화 작업 이후 전문가 심사 진행
▼		
Step 5	기초역량 강화교육 진행	• 공모전에서 선발된 콘텐츠 공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교육 진행
▼		
Step 6	예비 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콘테스트 진행	• 기초역량 강화교육 이수 후 서부내륙권 대표 체험관광 콘텐츠 선정
▼		
Step 7	체험관광상품 심화 교육 진행 및 촬영 지원	• 실무 이론 교육 진행 후 현장 교육 진행 - 실무 이론 교육 시 상품 스토리 발굴 진행 - 현장 교육 진행 시, 홍보 동영상 제작 • 20선 대상 홍보영상 및 사진 촬영 진행
▼		
Step 8	최우수 체험관광상품 선정 및 시상	• 판매 실적 및 이용 후기,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5개 상품 선정 및 시상
▼		
Step 9	최우수 체험관광상품 촬영 지원	• 5선 대상 추가 홍보영상 및 사진 촬영 진행
▼		
Step 10	홍보마케팅 진행	• 상품 홍보 기반 갖춘 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
	스토리텔링 컨설팅	• 상품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연계를 위한 컨설팅 진행
	OTA 플랫폼 상품 등록 및 판매	• OTA 플랫폼 가입 및 상품등록 - OTA 플랫폼에 적합한 상품 설명서 홍보자료 필요 • 일정 기간 상품 개별적 판매 및 프로모션 진행
▼		
Step 11	결과 및 성과보고	• 종료 후 결과 및 성과보고

4. 과업 시 유의사항

- 육성 교육 진행 시 이탈자 최소를 위한 인원 관리 및 일정, 연락망 관리 필수
- 용역에 대한 목적 및 취지 등을 충분히 숙지해 과업 발주자 및 예비우수콘텐츠(심화20선) 선정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 및 시나리오, 촬영, 성우 녹음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고의 조직을 구성하여 성실히 수행
- 시나리오에 의한 대본 일지 및 큐시트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실행
- 영상 촬영 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- 과업 수행자는 담당자가 요구하는 촬영 대상 행사의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 제작 기간 중 철저한 일정과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차질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짐
- 작가, 촬영감독, 편집자, 사업 관리자 등의 과업 참여 인력은 사업 착수에서 완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,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
- 성과품 납품 기간 준수

1. 과업관리

-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사업수행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·중간·월간·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 :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
 - 중간보고 : 1회(8월 중)
 - 월간보고 : 월 1회
 - 최종보고 : 1회(11월 중) ※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및 조정 가능

〈 표 20 〉 과업 수행보고 일정 및 주요 내용

구 분	시 기	내 용
착수 보고	계약일~7일 이내	· 착수보고회 개최 · 과업수행 착수계, 입력투입명단 ·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 (과업내용, 추진체계, 공정표, 산출내역서 등 기타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내용 포함)
중간 보고	과업진행률 40-60% 이내	· 중간보고회 개최 · 과업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 · 주요 문제점 및 의견논의 등
월간 보고	월 1회 (일정 사전협의)	· 월별 결과 보고서 제출 · 월간 추진실적 등 전반현황에 대한 분석/평가보고 · 주요 문제점 및 의견 논의
최종 보고	사업 종료 후 5일 이내	· 결과보고회 개최 · 과업 수행 종료에 대한 결과 확인 · 최종 결과보고서, 정산서 등 제출
수시 보고	상시	· 주요사항 결정, 유관기관 협의,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

기타 사항

-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보고는 사업수행관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나,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

2. 성과품 제출 및 작성 기준

-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, 사진,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협의를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 및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함
 -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,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, 부수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
 - 과업 성과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참여 인력의 이름, 참여기간,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참여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함
- 성과품 제출
 - 제출기간 : 계약종료까지
 - 성과품 납품 목록

〈 표 21 〉 과업 최종 성과 납품 목록

항 목	규 격	수 량	비 고
착수 보고서	A4	10부	PT 자료
중간 보고서	A4	10부	PT 자료
최종 보고서	A4	10부	PT 자료
최종 성과품	-	협의	포스터 및 배너, 영상·사진 원본 및 완성본 (외장하드 제출)
최종 성과품 요약 보고서	A4	10부	한글파일(칼라)
용역비 사용 실적 보고서	A4	10부	정산 증빙자료 일체
기타 증빙자료	A4	협의	요청 시 제출

기타 사항

- 모든 성과품의 편집·제작·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함
- USB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하며, 원데이터(Raw Data)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
1. 과업수행 일반사항

- 가.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의 발주 주체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을 이하 “발주자” 라 하고 본 과업을 수급 받아 수행하는 자를 “계약상대자” 라 칭한다.
- 나. 본 과업지시서는 “2026 로컬 특화 체험관광상품 육성 용역” 을 위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상품구성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보고하여야 하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민원 및 사고 발생시에는 재단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과업업무 수행 중 노동 관계법에 의한 계약상대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,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.
- 바.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, 만약 중도에서 용역계약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사. 작업 수행중이나 완료 후에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,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아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취지,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자. 발주자는 과업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

2. 과업진행 및 협의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작 시 7일 이내에 착수계, 최종산출내역서, 용역공정예정표,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다. 과업의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정하나,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라. 발주자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이를 상호 알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추진한다.
- 마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.
- 바.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사. 운영 일정은 발주자 및 참가자들의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므로, 최대한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.
- 아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업무전담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업부서와 운영방안, 일정 등을 상시 논의하여야 한다.
- 자.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과업진행, 인력동원,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내용을 확인,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상시보고 하여야 한다.

3. 조직 및 인력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, 투입인력 규모,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(PM)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할 경우 발주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.
- 다. 다만,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총괄책임자(PM) 및 참여자와 자격, 경력 등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라.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에 있어 계획된 일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하거나 수행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고,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체요청 사유를 문서화 하여 계약상대자 측에 정식으로 요청한다. 계약상대자 측은 발주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요청에 응해야 한다.

4. 과업의 보완/수정/변경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,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나. 보완 및 수정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.

5. 보안유지

- 가.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: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나. 보안관리의 책임 :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에 관련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출할 수 없다.

※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취득정보를 무단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음

6. 성과물 소유

- 가.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한 제작물·저작권·기타의 권리와 성과물,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.
- 나.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, 납품 완료시 발주자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,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발생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※ 고의,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
※ 제 3자에게 불법·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

7.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종료 후라도 용역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충청남도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다. 완성된 제작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중 자막 교체, 통계수치, 자료화면교체가 필요시에는 무상으로 교체한다.

8. 저작권 및 보안대책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·모방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.
- 나.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계약 상대방이 발간 전에 관련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, 재단에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,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상당자에게 있다.
- 다.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작되는 홍보영상 및 사진자료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·소유권·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약상당자가 재단에 납품한 시점부터 재단에 귀속되며 2차 가공 및 배포가 될 수 있다.
- 라. 불법 복제품 등 법령에 위배된 물품은 물론 다른 영상, 음원, 자막 폰트 등 자료의 불법 사용을 금하며, 만일 법률에 저촉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 상대방이 져야 한다.
- 마. 저작권이나 상표권,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, 계약상당자는 용역대금 전액(또는 사업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)을 반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손해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.
- 바.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(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), ‘계약 상대방’은 그 촬영에 관한 동의(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)를 득하여야 하며,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·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‘계약 상대방’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.
- 사.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재단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방의 임의 복사, 외부 유출을 금한다.
- 아. 본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(사고)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.

9. 안전관리

가. 계약상대자는 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중대재해처벌법 제4조)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)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, 예산,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- 2)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
- 3) 발주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
- 4)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나.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과업 책임주체인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10. 대금지급

가. 발주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용역의 완성 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 및 이윤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협의 및 발주자의 승인 없이 청구되는 기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
다.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용역의 최종 완수 및 점검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검사·검수의 완료를 통보받은 이후 청구서를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5일(주말, 공휴일 제외)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.

11. 계약의 변경

가. 아래의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협의 아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) 발주자에 의해 과업 범위의 축소,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
- 2)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
- 3)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* 상호 협의 및 발주자의 승인 이후 연장

나.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 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항목 변경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, 용역공정계획의 변경,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다.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- 단,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의 하자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12. 계약의 해지

가.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·해지 할 수 있다.

- 1) 계약상대자의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·인가·허가 등의 취소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정 싸움 및 조치가 있는 경우
- 2) 계약상대자가 사회적물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,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- 3)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
 - 실제 참여 인력,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- 촬영, 편집, 기획, 구성, 음악 등 영상제작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
- 4)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
 -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
 - 과업 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- 5)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6)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·양수 하거나 계약에 따른 일체 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였을 때 * 사업 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하는 경우
- 7)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8) 발주자의 합병, 사업의 종료 등 기타 경영상의 현저한 변화가 있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
나. 단,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정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용역대가(실비)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.

13. 손해배상

가.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른 손실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나. 본 계약 및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사무처리 및 합의에 관하여는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한다.

14. 기타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,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,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나. 「이해충돌방지법」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해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발주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라. 제작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,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거나,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- 바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, 행사 개최일시 기준 7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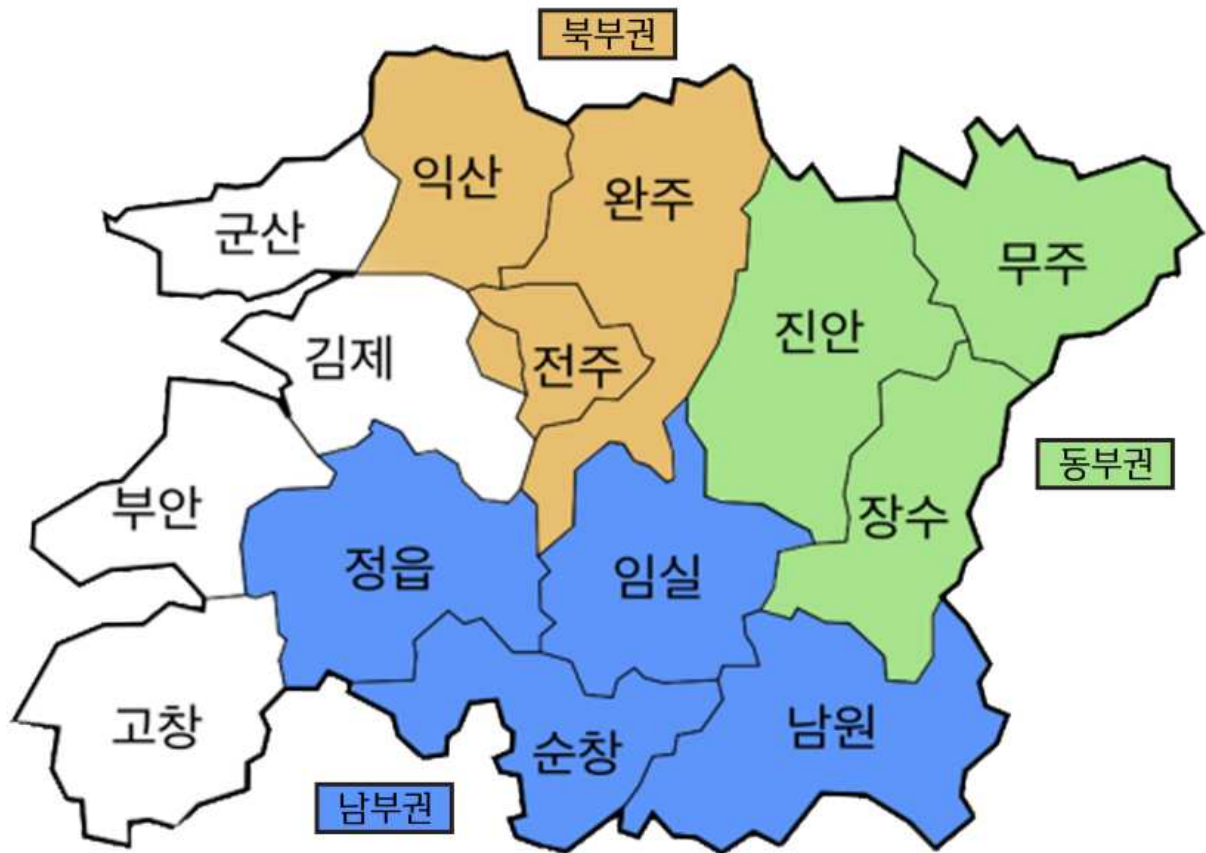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참고1

예정공정표

구분	세부항목	2026							
		5	6	7	8	9	10	11	12
입찰	입찰공고 게시								
	협상에 의한 계약체결								
체험관광 콘텐츠 및 로컬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	로컬 관광자원 자료 수집								
	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전 홍보								
	공모전 개최 및 심사								
	체험관광상품 및 콘텐츠 선별								
	체험관광상품 콘테스트 및 심의								
	자문단 구성 및 운영								
상품 지원	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								
	육성 교육(기초, 심화)								
	우수 체험관광상품 시상								
	컨설팅 교육 및 OTA 등록 지원								
보고	착수보고								
	중간보고								
	결과보고								
	정산								

○ 과업 수행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세부 일정 변경 · 조정 가능



- 과업 수행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설명회 개최 지역조정 가능 ※권역 수정 불가능